

# 인터넷 FX 딜링거래 약정서

(주)하나은행 앞

년 월 일

본인

(인)

주소

본인은 (주)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함)과 이 약정서에 의한 거래를 함에 있어 이 약정서가 적용됨을 승인하고,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약합니다.

## 제1조 (적용거래)

이 약정서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서 은행과 본인간에 이루어지는 현물환(이하 “FX딜링거래”라 함) 거래에 적용됩니다.

## 제2조 (용어의 정의)

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하고 특별히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금융시장의 관행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
- “FXKEB 시장환율”이라 함은 은행간 시장환율에 연동하여 “FX딜링거래”的 거래를 목적으로 은행이 본인앞 제시하는 환율을 말합니다.
- “시장가 주문”이라 함은 은행이 제시한 “FXKEB 시장환율”에 대하여 본인이 승인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.
- “지정가 주문”이라 함은 본인이 환율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.
- “반대거래”라 함은 은행이 개별 ”FX딜링거래”와 동일한 금액 및 만기일을 가진 반대 방향의 외환매매거래를 일으켜 원 거래를 종결시키는 거래를 말합니다.

## 제3조 (약정의 체결 및 해지)

- 이 약정의 체결은 이 ‘인터넷 FX딜링거래 약정서’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, 이 약정에 의한 “FX딜링거래”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영업점에 별도의 서면(‘인터넷 FX딜링서비스 이용신청서’)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이 약정의 당사자는 이 약정에 의한 모든 “FX딜링거래”的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약정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제4조 (사용할 계좌의 등록, 추가, 삭제)

-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“FX딜링거래”에 사용할 계좌를 통화별로 1계좌씩 은행에 등록 또는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, 등록 가능한 예금종별 및 통화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등록된 계좌와 관련된 모든 “FX딜링거래”的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영업점에 서면으로 등록된 계좌의 추가 또는 삭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## 제5조 (본인의 확인 및 비밀번호 등 관련 책임)

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이 입력한 본인 아이디, 접속비밀번호, 계좌비밀번호 및 은행이 정한 안전한 인증방법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할 경우, 은행은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처리하며, 이와 같이 처리한 경우 비밀번호 등의 도난, 분실 기타의 사고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## 제6조 (거래시간 및 거래한도)

본인은 은행이 정한 거래시간과 거래한도 이내에서 “FX 딜링거래”를 이용할 수 있으며, 거래한도는 본인의 외환거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하되, 본인이 인터넷상의 신청 또는 은행의 영업점에 별도의 서면(‘인터넷 FX딜링서비스 이용신청서’)신청을 통해 설정하기로 합니다.



## 제7조 (거래주문 및 체결)

- ① 주문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“FX딜링거래” 주문은 시장가 주문으로 간주하고 처리합니다.
- ② 지정가 주문은 “FXKEB 시장환율”이 본인이 지정한 환율 이상 또는 이하로 변경되었을 때 주문이 체결됩니다.
- ③ 주문 유효기일의 체결 가능시간 종료 시까지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 주문은 자동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 단, 주문 유효기일을 명시하지 않는 지정가 주문의 주문 유효기일은 주문 당일로 합니다.
- ④ OCO (One-cancels-the other) 방식의 지정가 주문은 하나의 주문이 체결되면, 나머지 주문은 자동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## 제8조 (거래환율)

- ① “FX딜링거래”는 “FXKEB 시장환율”에 수수료를 가감한 환율로 결제합니다.
- ② 외환시장의 폐장 또는 환율이 급등락하는 경우, 은행은 “FXKEB 시장환율”的 제시를 중지하거나, “FX딜링거래”를 종지시킬 수 있습니다.

## 제9조 (거래내용의 확인)

- ① 본인은 “FX딜링거래”的 처리 결과 화면으로 거래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② 은행은 지정가 주문의 체결, 반대거래 결과를 전자적인 수단을 통하여 본인앞 통지하며, “FX딜링거래”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③ 본인은 제1항 또는 2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당일 중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.

## 제10조 (거래의 변경 또는 취소)

체결된 “FX딜링거래”的 변경 및 취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.

## 제11조 (보증금)

- ① 본인은 당일 결제 이외의 “FX딜링거래”에 대하여 각 “FX딜링거래” 건별로 보증금을 적립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적립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② 은행은 거래체결과 동시에 본인이 지정한 보증금 출금계좌에서 보증금을 출금하고 거래 종결 후 다시 입금합니다.

## 제12조 (결제)

- ① 만기일 또는 결제일이 거래체결 당일인 “FX딜링거래”는 거래체결 즉시, 은행이 결제금액 또는 본인의 매도금액을 인출하고, 본인의 매입금액을 입금합니다.
- ② 만기일 또는 결제일이 거래체결 당일 이후인 “FX딜링거래”는 만기일의 은행 영업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결제계좌 또는 매도통화 계좌로 결제금액 또는 매도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.
- ③ 보증금 출금계좌와 결제계좌 또는 매도통화 계좌가 동일한 경우, 적립한 보증금은 만기 결제시 결제금액 또는 매도금액으로 간주합니다.

## 제13조 (반대거래)

- ① 제 12조의 만기결제시, 결제금액 또는 매도금액이 부족한 경우 은행은 반대거래로 당해 “FX딜링거래”를 종결 합니다.
- ② 은행은 반대거래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한 평가손익을 계산하여 정산합니다.
- ③ 제2항의 손익정산에 따른 본인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, 은행은 손실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 적립액 및 “FX딜링거래” 등록 원화 계좌에서 인출합니다.
- ④ 본인은 총손실금액에서 제3항의 은행의 인출액을 차감한 손실금액을 은행에 입금하여야 하며, 손실 발생일 이후에 입금한 경우는 입금일까지 은행이 정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⑤ 제3항의 경우, 은행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통지합니다.

## 제14조 (계약 불이행 등)

- ① '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' 또는 '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' 제7조 제1항 내지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은행은 통지로써 본인과 체결한 모든 또는 일부 거래의 해지, 채무이행의 거부, 거래한도의 감축, 거래주문의 접수 거절 등 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은행이 입은 손해를 은행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본인은 은행에 배상하여야 합니다.



## 제15조 (수수료, 비용 부담)

- ① 본인은 “FX딜링거래”와 관련하여 거래체결 및 반대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비용을 부담하고 은행이 계산 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하며, 이를 지체한 경우 소정의 요율로 계산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② 제1항의 수수료, 비용, 연체이자 등의 계산방법 및 환율의 적용은 은행이 정하며 은행은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이를 고시하기로 한다. 다만, 본인이 은행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.

## 제16조 (이행)

은행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약정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날에 은행이 이 약정서에서 정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동 사유가 해소된 후 가장 빠른 은행영업일 또는 양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에 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.

## 제17조 (계약통화 이외의 통화)

법원의 판결 또는 청산에 따른 배당 등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계약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급 또는 상환할 경우, 지급 또는 상환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 매매율을 적용합니다.

## 제18조 (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)

이 약정서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를 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## 제19조 (거래내용 등에 관한 책임)

- ① 본인은 “FX 딜링거래”의 내용과 그에 관한 국내외 외환 시장의 관련법규 및 관행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며 자기의 계산 하에 독립된 정보와 판단에 의하여 이 약정에 따른 “FX 딜링거래”를 체결하여야 하며, 은행은 “FX 딜링거래”的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.
- ② 제①항의 거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결정 하에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. 다만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해당 조항에 따릅니다.

## 제20조 (규정의 적용)

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‘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’, ‘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’, ‘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’, ‘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’, ‘현물환거래 약정서’, ‘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’ 및 기타 은행의 예금 관련 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### [유의사항]

인터넷 FX 딜링거래는 거래체결 후 환율의 변동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이므로, 이 인터넷 FX 딜링거래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이 약정서 및 제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등과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.

본인 : \_\_\_\_\_ (인)

###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확인

- 상기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받고 인감대조를 하였음을 확인함.

확인자 : 직·성명 \_\_\_\_\_ (인)      점검자 : 직·성명 \_\_\_\_\_ (인)

